

# 강원관광대학 자체평가 규정

## 제1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강원관광대학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·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평가원칙) 평가는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제 3 조 (평가대상) 평가대상은 본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.

제 4 조 (평가영역)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교육·연구 영역
2. 조직·운영 영역
3. 시설·설비 영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제 5 조 (항목별 평가)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등급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6 조 (평가지기) 평가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평가지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2장 평가기구

제 7 조 (자체평가위원회)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교학처장, 기획처장, 행정지원처장, 산학협력단장 및 각 학과장으로 하고,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2명을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단, 보직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자체평가 심사 및 심사서 작성
2. 평가위원회 운영
3.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
4. 자체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 개발
5. 기타 대학자체평가에 관한사항

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평가위원회는 평가관련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(회의비등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⑦ 자체평가의 기획·운영·조정·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담당한다.

제 8 조 (회의록)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,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 9 조 (간사) 평가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###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

제 10 조 (평가계획 수립) 기획처는 평가 해당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, 평가 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과(계열)에 통지한다.

제 11 조 (평가자료 제출) 자체평가의 해당 행정부서 및 학과(계열)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평가에 관한 기초자료를 작성·제출 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평가실시) 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의 지표 및 방법을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

를 거쳐 평가전에 공개하여야 하며, 평가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 후, 평가서를 작성한다.

제 13 조 (실사)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과(계열)에 대하여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 14 조 (평가결과 보고)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서와 행정부서 및 학과(계열)의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평가결과의 공시) 평가위원장은 대학의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대학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기타)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3일 부터 시행한다.